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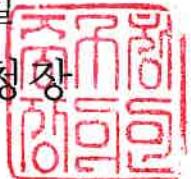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927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  
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  
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 
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  
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 
예고 합니다.

2023년 10 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의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 및 용어의 통일성을 반영하고자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조례명칭 변경(의료보호기금 ⇒ 의료급여기금)

-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용

#### 나.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

- 지방재정법 제9조 제3에 따라 현행 제10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(안 제6조)

#### 다.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
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중구청장의 의료급여기금 특

별회계 운용·관리 목적 및 주체 명시(안 제1조, 제2조)

-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따른 세입과 세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세부 항목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납입의 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의료급여법 제25조,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3항에 따른 상위 법령 불일치 규정 삭제(현행 제4조~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

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(참조 : 생활보장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전화 : 3396-5352

FAX : 3396-8730 E-mail : soyah12@junggu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고보조금
2. 서울특별시 보조금
3.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

4.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
5. 전년도 결산잉여금
6. 이자 등 그 밖의 수입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
2.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
3.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
4. 국고보조금 반환금
5.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
6.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

제5조(납입의 고지)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7조(그 밖의 사항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